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5. 30.(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3차 및 제2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26-243)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콕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휴대폰 등 전기통신단말장치를 수거하거나 파기할 시에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한다’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17년 2월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결합판매 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업법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17년 9월에는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또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에 대한 사업법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입법예고와 규제위 심사를 마쳤고, 이에 따라서 기존 위원회에 보고드린 두 번의 사업법 개정안을 모아서 오늘 심의·의결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통신분쟁조정제도, 유선포털-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는 동일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서 법제처의 운영규정 상 오늘 의결안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통신 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신설조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휴대폰 리콜 등 단말장치의 결합 등으로 단말기를 수거하거나 파기할 시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정책의 범위와 또 이용자 고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은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으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 중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휴대폰 리콜 등과 관련한 관련규정이 없어서 근거조항의 신설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 부분은 '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 외에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이행강제금 신설규정입니다. 금지행위 관련해서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시에는 하루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있지만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1,000만원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령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17년 4월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자료제출 불응 시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은 내부 자체규제심사결과를 반영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제2항과 제3항을 상호 이동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제52조의2에 있는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평균매출액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주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규정에 되어 있는 이용자 범위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법제처에서 '16년도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 행위'를 추가하는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이용계약 체결과정에 있는 자'도 이용자에 포함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를 반영해서 동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은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이용계약 체결 과정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와 같이 잠재적 이용자도 포함하였으나 잠재적 이용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례성 및 명확한 원칙에 반한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현재 결합판매서비스라는 용어는 시행령상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금지행위의 제50조제1항제4호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산정하는 행위, 제5호 이용자인익을 저해하는 행위, 제5호의2 중요사항을 미고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추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은 입법예고안 중에서 제4호의 경우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산정하는 행위만으로 금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제49조 회계 정리 규정과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합판매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서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하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결합판매서비스를 추가한 것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실조사 실시 요건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조사 전에는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다른 입법례와 같이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과 형사소송법에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5월 부터 7월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사안은 휴대폰 리콜과 관련된 이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오늘 안건은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는 2016년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 이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미미한 측면이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 조항에 보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때 물건이나 또는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사업자 가운데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 조사관들이 해당 사업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랬었나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그러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수단을 갖게 되고, 사실조사 실시요건이 늘어난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시켜서 상담 과정에서 고가요금제 유도나 강제 권유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약단계에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서 통신방송 인터넷서비스의 다양한 미디어 결합상품 이용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게 된 것도 굉장히 뜻이 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더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26-344 ~ 351)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등을 위반한 8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배경은 개인정보 유·노출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대상은 8개사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업자가 리치인베스트, (주)제이퍼컴퍼니, 카카우드, (주)하트잇, (주)한빛소프트, 휠라코리아(주)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업자는 (주)지세븐 인터내셔널, (주)태진인터내셔널 2개 사업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조사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전통지와 사업자에 대한 의견접수를 4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개인정보 유·노출경로 및 내역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개인정보 유·노출경로 및 내역입니다. 먼저 리치인베스트는 증권정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입니다. 해커의 SQL인젝션 공격으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ID, E-mail 등 약 12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제이퍼컴퍼니는 해커의 웹사이트 취약점 공격으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등 14,49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주)지세븐인터내셔널은 별정통신사업자인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등 개인정보 10건이 게시판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카우드는 가구쇼핑몰 사업자로 해커가 외부에서 관리자권한 계정을 생성하여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ID, E-mail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태진인터내셔널은 패션쇼핑몰 운영사업자로 홈페이지의 트래픽 증가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여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유포인트 등 17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주)하트잇은 광고링크 서비스사업자입니다. 해커가 외부에서 DB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E-mail, 생년월일이 유출되었습니다. (주)한빛소프트는 게임서비스 회사입니다. 해커의 웹사이트 취약점 공격으로 ID, PW 6,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운영 중인 패션쇼핑몰이 해커의 ID 및 PW 사전대입 공격으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1,168건 유출되었습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정리된 <표>를 보시면 리치인베스트는 개인정보 유출을 지연 신고하여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했고,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 소홀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건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 위반했으며,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규정한 법 제29조제2항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이피컴퍼니는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보관의무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건을 위반했고, 해당 법 규정은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입니다. 지세븐인터내셔널은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했습니다. 카카우드는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보관의무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건을 위반했고, 해당 규정은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입니다. (주)태진인터내셔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연신고하여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주)하트잇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연신고하여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했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2건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입니다. 한빛소프트는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 소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2건을 위반했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5호를 각 위반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보관의무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3건을 위반했고 해당 규정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입니다. 6페이지 피심인 제출의견입니다. (주)한빛소프트는 해커가 악성프로그램을 업로드 할 당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해커의 웹에디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탐지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웹에디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 업데이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침입차단 탐지시스템의 운영’은 단순히 방화벽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의 업로드를 탐지하는 등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웹에디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의 편집기능이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7조의 ‘보안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응용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확인하여 보안 업데이트 공지를 했음에도 즉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위 고시 제7조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이피컴퍼니와 카카우드 2개사는 유출사실을 인지한 후에 신고절차를 알지 못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신고를 늦게 하였지만 경찰청에는 즉시 신고하였고,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후에 즉시 경찰청에 신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밖에 리치인베스트 등 5개사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였거나 현재 개선하고 있는 중이므로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리치인베스트 등 8개사에 대해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신고의무 위반입니다. 리치인베스트 등 3개사가 해당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의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사업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리치인베스트, (주)하트잇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 (주)태진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그대로 부과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따라서 최종과태료는 리치인베스트 등 2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하고 (주)태진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리치인베스트 등 7개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망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리치인베스트 등 7개사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과 망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병과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치인베스트, 카카오드, (주)한빛소프트 등 3개사는 유출경로 등 정확한 유출원인과 이용자 피해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고 (주)제이피컴퍼니, (주)지세븐인터내셔널, 휠라코리아 등 3개사는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작고, 조사 이후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주)하트잇은 소기업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사항이 있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망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리치인베스트 등 6개사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소기업이고 위반행위가 1개인 (주)지세븐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했습니다. 최종과태료는 리치인베스트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500만원을 부과하고, (주)지세븐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리치인베스트의 경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가중 및 감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였습니다. 리치인베스트의 최종과태료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치인베스트가 2,500만원, (주)제이피컴퍼니 1,500만원, (주)지세븐인터내셔널 500만원, 카카오드 1,500만원, (주)태진인터내셔널 1,000만원, (주)하트잇 2,000만원, (주)한빛소프트 1,500만원, 휠라코리아(주) 1,500만원 총 8개 사업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 통보 후 하반기 중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안건은 해커 공격 시스템 문제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경고를 줄 수 있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또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를 보면 직원이 300명이 넘고 또 유명 패션쇼핑몰입니다. 연간 매출액도 3,400억원이나 됩니다. 또 온라인 매출액도 약 38억원 정도, 굉장한 수익을 내는 큰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 또 위·변조 방지, 암호화 이런 가장 기초적인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도 많고 매출액이 3,400억원이나 되는 큰 회사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보안의식이 이렇게 미흡해서 어떻게 이런 큰 매출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장에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감경하고 감경해서 직원이 1~2명, 5명 이런 곳과 같이 과태료 1,500만원 정도밖에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입니까? 그렇게 큰 회사도 저렇게 기초적인 것을 다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영세업자인데 이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국장님, 이것을 달리 선별해서 규모가 크고 규모가 작고 그런 감경에 가중처벌 조항을, 물론 법에 없는 규정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보안 투자, 또 관심 제고가 필요하고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휠라코리아 유출사고의 경우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4개 IP 주소에서 총 270만번의 사전대입 공격을 시도해서 그중에서 약 1,200여건, 중복 제거 시 1,168건만 유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커가 기 확보된 아이디나 비밀번호 주소를 휠라코리아 홈페이지에 계속 대입해서 일치가 되는 1,000여건 정도만 유출된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해킹에 대한 방지노력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암호화 전송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해당 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유출규모가 휠라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사무처에서 올린 문구를 보면 '유출 규모가 작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엄격하게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건이 매달 몇 건씩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다음에는 적용을 엄격하게 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면 저희가 과징금 대신에 과태료로 갈음했는데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위반행위로 사업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피해규모가 작은 경우, 보유하는 개인정보 규모에 비해 5% 이내의 소규모인 경우, 그다음에 그 정보가 일반 공중에게 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라코리아에는 이 3가지에는 현재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산정해 보니까 월라코리아는 약 1,400여만원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액도 올리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엄단하는 측면이면 저희가 사전에 부과 고시나 이런 기준을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수만 개의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철저한 보안의식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제3항에 보면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유출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피컴퍼니와 카카우드 같은 경우 우리 사무처에서 올린 문건에는 '유출사고 인지 후 신고절차를 알지 못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신고를 늦게 하였지만' 24시간 이후에 했다는 이야기지요. '늦게 하였지만 경찰청에는 즉시 신고하였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제3항에 분명히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신고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두 회사 카카우드와...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신고는 나중에 했습니다. 당시에 유출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방통위에 신고하는 절차를 몰라서 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는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바로 통지를 하는 조치는 취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경찰청에 신고한 것은 24시간 이내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법조문에는 24시간 이내에 방통위나 KISA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은 어긴 것 아닙니까? 위반했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것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긴 것이 맞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다만,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 주면 앞으로 모든 사업자가 이것을 위반할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다 눈감아 줄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 신고를 경찰청에만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줬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과거 사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24시간 이내에 방통위나 KISA에 유출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기업들이 유출된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알려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꾸거나 보호조치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분들이 경찰에 자진신고를 했다는 것은 방통위나 KISA에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유출사실을 감추거나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조치도 충분히 취해졌다고 보고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이 맞지만 그런 취지 측면에서 의견을 수용했던 측면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신고를 하는 이유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해커를 잡게 한다는 이런 수사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3의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27조의3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빨리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고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런 것을 빨리 고지해서 최소한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경찰청 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법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봐 준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여기면 '우리는 그런 절차를 몰랐어요'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작은 과태료라도 매겨서 사업자들이 신고절차를 경찰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된 대로 방통위나 KISA에 반드시를 신고해서 제3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절감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이 아주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다루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관점에서 들어오는데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본 피해자의 피해보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피해보전은 정보통신망법에 법정 손해배상제도라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있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피해가 원래 없어야 이용자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고 난 뒤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거나 이와 같이 불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보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자 관점에서 사업자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감경해 준다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오히려 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표철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재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08년도 옥션이 1,800만건 유출이 됐고, '11년에 싸이월드가 3,500만건 유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KT가 2012년에 1차로 870만건, '14년도에 2차로 1,170만건이 유출되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이 유출 사건의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4건, 자잘한 것 빼고 대형 유출사건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아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일부 소송이 계속 계류된 사항도 있고 중간 항소심 판결 나온 것도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는 10만원 내외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 패소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다 패소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판결 외에 대규모 사업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아주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재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제재해서 사업자들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받아서 그것이 국가 재정에 플러스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은 피해자들,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KT 개인정보 유출 건 관련해서 양기철 과장님과 같이 재판을 참관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을 들어서 제재를 하는데 지금 KT 건 같은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가서 보니까 첫 번째는 재판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하는 것 같지만 2014년에 있었던 사건 1심이 얼마 전에 끝나고 이제 4년 지나서 2심 항소심의 첫 번째 재판이 2주 전에 열렸습니다.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혹시 재판을 관리합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2심인데, 만약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황선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2014년도 KT 소송 건은 '16년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올해 6월 8일 8차 마지막 변론을 하고 7월 중에 2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4년, 대법원까지 가면 6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라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판 참관한 느낌이 뭐냐 하면 사업자들이 사전규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전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규제 부분에서 자꾸 허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 가서는 그 허점을 가지고 법리논쟁을 통해 빠져 나갑니다. 몇 백만명, 심지어 1,00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놓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 했다, 그래서 기업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빠져 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큰 모순을 느꼈습니다. 이용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이 왜 이용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주장을 인정해서 기업들 손을 들어줍니까?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고시 같은 경우 우리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재판 결과를 보니까 고시에 허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결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고시에 허점이 있다면 반영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재판 과정을 보면 상대측 변호사들이나 로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고시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 간과하지 마시고 재판 결과를 참고해서 기업들이 방패로 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재판도 참관하고 우리의 개인정보 유출 건 관련한 조사 문제나 제재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건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저희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다투는 이유는 개인들의 민사 소송을 억제하려거나 지연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 결국에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률 시행령 고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토대로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문법 체계, 입법체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 법원과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법보다 엄격합니다.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라는 사항, 지난 25일 시행된 GDPR의 경우에는 72시간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이용자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에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정하고 시행령 고시에서 세세하게 정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GDPR은 그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명시적으로 해 놓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출이 되면 엄격하게 법원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서 기업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된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나 국민의 피해구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하고 제재는 합시다만 재판에 가서 건건이 패소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라는 취지이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 과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안전 심의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기 방통위 출범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사업자의 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여러 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유사사례를 접하면서 저는 조사방식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이나 혹은 관리자의 주의 소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련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방통위나 KISA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경찰청에 신고가 되면 곧바로 방통위나 KISA에 알려주는 그런 작은 노력만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청에 신고가 된 이후에 수일간이나 뒤늦게 다시 신고하는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간단한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보는 문제는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피심인 가운데 지세븐인터내셔널과 태진인터내셔널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아니라 노출되었습니다. 그것도 10여건입니다. 지세븐인터내셔널 10건, 태진인터내셔널이 17건을 노출했는데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됐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중대성에 상관없이 전수조사 후 제재로 직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10여건이 노출되는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 이용자 안내나 즉시 개선조치, 그리고 피해보상 조치를 했는데도 방통위 조사나 제재로 이어지게 된다면 과잉규제라고 느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비례원칙에 맞고 행정청의 조사의 실효성 그리고 효과성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유출신고 범위를 1,00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안전은 원안대로 심결하되 향후 제제안전에 대해서는 유출신고 건별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조사 시기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조사하고 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말씀하신 부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표철수 위원님은 과태료를 재산정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삼석 위원님도 재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안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제제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두 분 계속 재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다수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일단 원안대로 가고, 다만 김석진 위원님, 표철수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가중·감경, 특히 감경 같은 경우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더 검토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 허 욱 부위원장님, 또 고삼석 위원님 의견을 주시니까 저도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건은 오늘 심결하고 나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더 엄하게 하겠다는 부분 보도자료를 별도로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기자 브리핑할 때 그 부분은 강조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시정조치와 과태료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앞으로 EU GDPR에서 보듯이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행하려면 우선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이것은 사후에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계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별백계를 통해 많은 사업자들이 조심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 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입니다.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 중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현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한해서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규제의 개선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현재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2016년 5월에 있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한하여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올해 6월 30일 일몰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전파법 시행령상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만 규정되고 있어서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병기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타 방송국과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허가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2의2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해서 방송사업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개정 연혁을 보면 2010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없었을 때입니다. 모든 허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이 방통위로 되어 있었는데 '13년 3월 23일 개정되면서 아마 법령 개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만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조항이 일부 변경됐는데 이때도 또 방통위가

빠져 있어서 이번 개정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행 제36조제1항2의2에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기타 조항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를 마치고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 '18년 9월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전부 5년인데 공동체라디오방송국만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5년으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로 동시에 병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일원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의 하나로 오늘 여기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의견들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법령에는 허가를 2개 부처 장관이 누구 또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대부분 주무부처가 있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 미래부가 생기면서 방송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송법과 전파법만 특수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경우 이왕 고치면서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잘못된 것을 이왕 고친다면 누구 또는 누구 이렇게 하는데 법체계상 우습지 않습니까?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추천과 기술 심사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병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부처 한쪽에서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소관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불합리한 점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미래부라는 쪽으로 이관이 된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무기관으로서 권한 행사하기보다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 입장을 보면 이런 불필요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뿐만 아니고 SO 허가 사전동의제, 이중규제지요.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대단히 짐을 지워드려서 죄송하지만 고삼석 위원님 같은 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건은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김석진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2012년도에 새 정부 들어서고 2013년도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방송 허가권자가 방통위원회가 빠지고 버리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만 명시가 되고, 또 그대로 가다가 '17년도 작년에 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여전히 그대로 과기정통부장관이 허가권자로, 다시 말씀드려서 '13년부터 5년간 방통위원회 주무 허가권자가 빠진 것입니다. 이대로 어떻게 존속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뒤늦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정부조직 개편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허가권이 슬그머니 빠진 배경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춰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사무처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5년간 방송을 주관하는 부처가 공동체라디오에 관한 한 아무 허가권한이 없었다는 것, 그대로 존속되어 왔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라디오가 아주 취약한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상파방송처럼 그렇게 한번 허가를 받으면 5년간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소수의견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정목표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들여다봐서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점검해 보고 이렇게 가야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미래부 쪽으로만 단선으로 병기가 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령 개정 오류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늦게 발견하긴 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전파법에 혹시 병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처 단독으로 되어 있는지 조항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일하게 이 조항만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서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비록 2013년에도 방통위가 빠져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에서 1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한시적으로 3년을 2년 동안 5년으로 늘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6년입니다. 물론 전파법에는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어 있었지만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허가 심사는 방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방통위가 이 부분을 법령 개정하고 허가증을 다 갱신해 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는 부분이 되었고, 아울러서 이번에 다른 조항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 조항에 한해서 이렇게 단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의견 없습니까?

○ 허 옥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안건 나>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이유는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와 제54조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관련해서 2017년 6월에 저희가 공익채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고시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서류, 신청접수 방법 등과 관련해서 공익채널 선정 신청자격에 관한 기본 사항과 제출 서류의 안내,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방법과 보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선정결과 공표 등과 관련해서 심사기준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선·인정된 채널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운영계획서상에 제시한 사업계획의 불성실 이행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선·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선·인정 심사에 비례량 심사 항목이 많아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선·인정 사업자의 사업계획 대비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줄이고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항목과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을 일치시키고 이행실적 심사 시 기존 선정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 대비 실적달성도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부과하여 환류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항목의 계량 평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36%로 상향하였습니다. 선정심사는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심사, 의견 청취, 현장 실사를 통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조건 부가, 실적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공익채널 운영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정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선정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통위는 선정 사업자에 대해 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실적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평가기관의 장이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익채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보고, 행정 예고,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공익채널, 또 장애인복지채널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심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진즉에 이렇게 공익채널 선정과 또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해서 고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고시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사 기준이 변경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만 거창하게 내고 이행실적은 팽개치고 경제계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분식회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그럴싸하게 계획만 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되고,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이행은 뒷전이고, 특히 비계량 평가가 90%라는 이야기였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렇게 해서는 투명하게 선정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라도 진즉부터 비계량 쪽 90% 평가를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뒤늦게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채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정기준도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반드시 다음 계획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 심사 때 꼭 반영되도록, 그것이 주요내용 골라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뒤늦게 이렇게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익채널도 2년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공익채널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내년부터 적용되니까?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올해 선정하면 선정된 사업자는 2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사무처 고생 많았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저도 이번 고시 제정은 굉장히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익채널이나 장애인 복지채널이 경쟁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 결여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대비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항목, 이행실적에 대한 심사항목을 일치시키고 계량 비율을 높인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사항목 중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의 제작·편성실적과 본방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계량화시킨 것은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여겨져서 아주 잘한 것이고, 저는 원안 접수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관련인데 심사 사항 항목에 보면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공정성'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왜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방송법에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나 이런 기준으로 공정성·공익성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서 공익채널 심사에도 비슷한 기준이 들어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채널 심사 같은 경우 공정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얼마나 공익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잘 편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평가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좋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거의 기계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 <보고안건 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부입법계획 등에 따라 방송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방송분쟁조정 제도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또한 방송의 유지·재개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직권 조정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위 규제심의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아마 방송통신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것인데 그동안 방송계 반대 등으로 내용을 많이 축소해서 그리고 분쟁조정 권한을 많이 약화시켜서 방송계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은 많이 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허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욱 부위원장

-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반드시 법체계 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알다시피 직권 조정 제도는 제3기 방통위에서도 마련됐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때 지상파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의견청취 절차 후에 이 내용은 빠지고 유지·재개명령 제도만 도입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욱 부위원장

- 그런데 통상 방송유지나 재개를 명령하는 것은 블랙아웃이 벌어진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스카이라이프나 지상파 3사 분쟁사례에서 보듯이 직권조정 권한이 없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져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직권조정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입법과정에서 방송사업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분쟁 조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잘 성사가 되지 못했던 과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사업자들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많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지상파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오늘 보고가 접수되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붙임>자료에 보면 소위 지상파사업자들의 의견이 사적 계약에 관한 영역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방송협회 차이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방송협회 부분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사업자 간의 계약 문제, 특히 CPS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성명서를 5월 25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모든 계약에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국민관심행사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사업자 간의 분쟁, 블랙아웃이 발생해서 시청자가 볼 수 없다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에 한해서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보루수단으로 정부가 직권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차피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지요?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때 충분히 사업자 의견을 듣고서 혹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직권조정 제도를 우리가 발동할 때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한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렴될 수 있는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적으로 계약을 맺는 영역이긴 하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절대로 양 당사자 간 SO나 IPTV와 지상파 간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지상파 광고가 자꾸 빠져서 어렵습니다. 중재자가 없으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처에서 올린 안도 방송의 유지·재개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서만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권 보호라는 그 가치가 더 큼니다. 사적계약에 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이 가치보다도 시청권 보호가 더 큰 가치라는 점에서 도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전제가 있다면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진행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오늘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충분히 개별적인 의견수렴을 받고, 또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회를 계획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토론회도 좋겠지요.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물론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심결하고자 하는 이 사안은 일반사업자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라는 것은 국가 자산인 전파를 허가받아서 운용하는 것이고 지상파방송의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강조가 됐습니다만 바로 국민들의 시청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유지·재개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직권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시청권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또 보편적 시청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법 제76조에도 분명히 국민들 관심이 큰 국민관심행사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은 극히 제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꼭 필요한 역무로서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권조정을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듣지 않을 경우에 강제수단이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시장조사과장

- 아닙니다. 법에 양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결론적으로 직권조정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명색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만 할 일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분쟁이 있으면 규제정책 당국과 합리적인 대화와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면 좋은데 전부 다 법원으로 가져 갑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절차로서 법원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안까지 모두 다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정책당국이 있는데 사업자들, 다들 허가받은 사업자들인데, 그런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 매번 법원에 가서 논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특별히 반대했던 것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재정제도였습니다. 3년 전에 관련 조항들을 개정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당국으로서 사업자들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특히 이용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유지·재개명령권과 직권조정 그리고 재정이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재정제도 도입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직권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들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또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아무런 역할도 못 한다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최소한의 조정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는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시청자인 국민들, 시청자단체 이런 곳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예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저희 위원회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고, 다만 지상파방송 쪽에서 이것이 과거의 조정제도인 것으로 보고 아마 반대하신 것 같은데 재정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즉 강제성 있는 재정제도가 빠졌다는 점, 또 보편적 시청권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입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후에는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조정제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들을 잘 설득하고 또 그동안 입법예고하는 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나 방식을 통해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동료 위원님들께 송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특정 언론사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를 놓고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내용이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으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평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지만 최소한의 사실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백번 옳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오보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TV조선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제가 된 3가지 보도를 거명하면서 북한이 미국 언론에 취재비 1만 달러 요구를 했다는 기사는 TV조선 쪽 해명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서 보도했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풍계리 갭도 폭파 안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10여분간 착오로 노출되었다가 발견 즉시 삭제되고 즉각 사과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TV조선은 ‘청와대 성명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례적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될 경우 청와대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직접 내놓고 논평하는 경우는 딱 이례적이 아닌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성명은 자칫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유감입니다. 또한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특정 언론사 구독과 시청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하려는

것으로도 비쳐지기 때문에 걱정인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언론자유를 가치를 굉장히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또 지켜야 할 그런 주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자유롭게 권력과 정부를 비판하되, 그 오보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강요하듯이 불매 운동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도 결국은 독자와 시청자들 몫이지, 언론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해당 언론사는 즉각 사과해야 하고, 내부 문책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판단을 강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주에는 제가 MBC의 해고사태가 줄을 잇고 있어서 걱정이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KBS 이사회가 열리는데 진실과미래위원회 이런 안전이 상정된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걱정했던 MBC 정상화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공정 보도, 부당징계,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란 이런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이 나갔는데 거기 보면 'KBS는 방송법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KBS에 내린 감사업무를 자제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KBS의 자체감사기구가 아닌 비감사기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 점검, 확인 등 사실상 자체 감사업무를 행하지 않도록 감사원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성명에서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불법감사기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사·감독권을 발동할 것을 의원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예의 주시해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불법이면 정말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미리 걱정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지난주는 김석진 위원님 발언에 대해 MBC 문제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서운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여와 야가 정쟁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매주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김석진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타 발언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대응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책을 다루고 행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국회 여야가 정쟁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합리적이고 또 깊게 생각하시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물론 또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특정언론에 대해서 보도까지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청와대 입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70년 만에 찾아온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다른 시기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특정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정말 팩트체크를 잘 해 달라 이런 당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도, 모르겠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아프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중한 표현입니다. 발목을 잡지 말아 달라고 어떻게 보면 간청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또한 청와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없습니다만 '구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불매해라, 보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많습시다만 앞으로 김석진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 문제는 오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결도 안 된 사안입니다. KBS 이사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부당하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다음에 방통 위원회에서 규제기관으로서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논의 하시자고요. 그런데 지금 KBS 이사회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안, 자유한국당 과방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했다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대변한다면, 여기도 위원님들 여야로 나누어서 논쟁해야지요.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매주 이렇게 회의시간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유감 표시를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간단하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표명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도하게 정치적인 사안을 들고 와서 여기에서 정쟁을 일삼는 또 정치 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저 스스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방통위가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신장시켜야 하는 부처다 보니까 걱정을 제가 한 것입니다. 아까 불매 운동을 하라는 메시지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고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쳐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정치권 여야로 나누어서 국회처럼 정쟁으로 토론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 소신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과거에도 제가 제3기 방통위 때도 지나치게 정쟁을 하는 모습을 바람직하지 않게 봐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기 방통위 3년 활동하면서 정부의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에 대해서 거의 매주 매일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잦은 논의를 하게 되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자제하고 자제했습니다. 수십 명의 방송인들이 해직되고 수백명이 부당한 인사명령 받았을 때 김석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때도 대부분 MBC 후배들 아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런 행태가 있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도 공영방송사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영방송 내에서 부당한 인사문제가 있다면 저

자신부터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잘못이 있는지, 방통위원의 권한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MBC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적폐청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인사 징계 결과 나온 것도 다 블랙리스트 만들고 카메라 기자들, PD들 탄압했던 것에 대해서 인사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지, 그것 자체를 적폐청산 보복 이런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방통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기관이고 정책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주 이렇게 방통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장시키는데 노력해야 하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안전을 심의하시면서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개별 건으로 일종의 공방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원론적인 부분, 원칙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야 하고 거듭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일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진행 중인 외교교섭은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문제도 외교교섭에 준하는 문제이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고 보도의 대상이지만 또 그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 더구나 그것에 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외교교섭에 큰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는 우려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그런 우려표명이지만, 우리 언론을 경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엄중한 외교교섭에 해당되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정도의 우려이기 때문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KBS, MBC의 경우에는 과거의 불법이나 탈법이나 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일 그런 것들이 지나친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감독기관으로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리 우려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석진 위원님의 염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설전을 벌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6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4분 폐회 】